

■ 세 미 나

가정의학과 수련지침

이 정 권

성균관의대

1. 교육목표

지역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건강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1. 환자를 제일 먼저 진료하는 일차의료 의사의 능력을 갖춘다
2. 가족주치의로서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3. 행동의학을 바탕으로 정신사회적인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4.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5.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6. 각 전문분야에 환자를 유효 적절하게 의뢰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7. 학술 연구 및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다.

전공의 수첩 사용 지침

1. 전공의 수첩의 목적

전공의 수첩의 가장 큰 목적은 각 전공의 수련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함이고, 보조적으로 전공의의 수련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구체적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전공의 수련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
 - 월별 수련기록, 외래/퇴원 환자 기록, 과별 수련 내용 기록
 - 학회/연수교육/가정의학 집담회 (FGR)/전공의 평가 시험 참가 기록
 - 발표논문/연제발표 기록
- 2) 전공의 수련의 가이드라인 요약제시
 - 가정의학과 수련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 타 전문과목 수련 인정 기준
 - 과별 수련 내용 요약
- 3) 수련의 적절성 평가에 활용
 - 매년 각 학회의 수련 평가 목록으로서 제시됨
 - 전문의 자격 평가
- 4) 전문의로서 자격/능력의 증거
 - 일종의 이력으로서 각 병원/의원 채용시 제시

2. 전공의 수첩의 기록

전공의 수첩 기록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효율적이다. 바쁜 환자 진료 스케줄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기록하기 불가능할 때가 많지만, 적어도 매일, 매주, 매달 일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1) 매일 기록해야 할 내용
 - 외래 환자 기록, 퇴원 환자 기록
- 2) 매달 기록해야 할 내용

이정권: 가정의학과 수련지침

2. 연차별 교과과정

연차	환자취급범위	교과과정	학술회의 참석	논문제출	타과 판견	기타요건
1년차	퇴원환자 60명 이상 (연인원, 가정의학과 환자 10명 포함)	1.가정의학과: 전속수련 6개월 이상 2.필수 전공과목: 내과 6개월 이상, 소아과 2-4개월, 일반외과 2-3개월, 산부인과 2-3개월을 반드시 파견해야 한다.				
2년차	1. 퇴원환자 40명 이상 (연인원 가정의학과 환자 10명 포함) 2. 외래환자 100명 이상 (연인원)	3.필수 선택과목: 파견기간 8-13개월. 정형외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지역사회의료기관, 응급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등이 포함되며, 이 중 최소 5과목 이상을 전과정에 걸쳐서 수련받아야 하며 과목당 2개월 이내에서 수련받을 수 있다. 4.자유 선택과목: 파견기간 4-6개월. 수련기간 중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수련할 수 있다.	학술대회 3회 이상 원내 300회 이상	제 1저자 논문 1편 포함, 논문 2편		
3년차	외래환자 200명 이상(연인원)					수련기간 중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주관하는 전공의 평가 시험에 1회이상 참가
총계	1. 퇴원환자 100명 이상 (연인원, 가정의학과 환자 10명 포함) 2. 외래환자 300명 이상 (연인원)					
비고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회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각 연차별로 파견할 수 있다.					

- 월별 수련 기록

평가 시험 참가 기록

- 발표논문/연제발표 기록

3) 매년 기록해야할 내용

- 수련 기록, 과별 수련내용 요약

3. 기재사항 관련 규칙

4) 현장 기록이 필요한 경우

- 학회/연수교육/가정의학 집담회(FGR)/전공의

학회/연수 교육 참가 기록과 연구 논문 발표 기록

은 전문의 자격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이정권: 가정의학과 수련지침

학회의 수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제 3조 (학술대회)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3회 이상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하고 이 중에 2회 이상은 대한가정의학회 학술대회이어야 한다.

2) 제 4조 (연수교육) 전공의 수련기간 중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인정하는 전공의 연수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3) 제 5조 (연구논문)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증례 보고를 제외한 연구 논문 2편 이상을 발표하여야 하며 이 중 1편 이상은 제 1 저자 이어야 한다.

4) 제 6조 (논문발표) 제 5조의 연구논문 중 제 1 저자인 논문 1편 이상은 대한가정의학회지에 게재해야 한다.

4. 기록원칙

1) 확인이 필요한 난

- 교육 담당 과장 (파견과 또는 가정의학과) 월별 수련기록

- 가정의학과장

수련 기록, 과별수련 내용 요약

-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FGR, 대한가정의학회 주최 연수강좌

2) 외래 진료기록

- 최저 기준 만족 (300명 /연인원)

3) 퇴원환자 기록

- 최저 기준 만족 (100명 /연인원, 가정의학과 환자 10명 포함)

- 퇴원 요약지는 따로 철해서 유지한다

4) 학회 참가 기록

- 대한가정의학회와 일반 학회 구분

* 현재 병원표준화심사 및 수련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수련 상황을 전공의수첩 기재 사항으로 확인하는 항목이 많으므로 충실한 기재가 요구됨.